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개선

양승현 연구위원

요 약

-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합리적 자회사 소유기준 마련(법령해석/가이드라인) 및 적극적 인가정책 운영으로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 원칙적으로 (i) 보험회사가 수행 가능한 헬스케어 업무는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로도 허용하고, (ii)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함
 - 또한 기업/개인 대상 건강상담·실천 관련 서비스, 헬스케어 물품의 도소매 판매·중개·배송 및 관련 물품 임대·광고, 관련 시설 운영 등 가능 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임
- 2021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는 '건강 유지 증진 또는 질병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22개사에 이르는 데 비해 헬스케어 자회사는 2개사에 그치는 등 활성화가 미진한 부분이 있음
 -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는 제한적 열거 방식이기 때문에, 자회사 수행 업무 중 열거되지 않은 업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가 규제 위반의 법적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임
- 본건 방침에 따라 업무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구체적 해석 지침이 제공되면 향후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로는 헬스케어 자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신고 대상 업무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또한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신고 대상 업무를 금융위원회 고시로 추가할 수 있게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신고 대상 업무 전체에 대해 해당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도 원칙적으로 영위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회사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보험업계는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신사업분야 진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하, “본건 지원방안”이라 함)을 발표함¹⁾²⁾
 -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는 올해 7월 금융규제혁신회의의 36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본건 지원방안은 이를 위한 실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이해됨
-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 이른바 유병장수 시대에 대한 사회적 대응 마련이 촉구되면서 지난 수년간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 등은 보험회사가 사전 예방적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노력해왔음
 - 주요하게 논의된 부분 중 하나가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였는데, 보험업은 전형적 규제산업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영위할 수 있는 업무³⁾뿐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제한되기 때문임
 - 보험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는 부수업무로 인정(법 제11조의2)되어 2019년에는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2020년에는 일반인까지 포함해 제공이 허용됨
 - 반면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했으며, 2021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헬스케어서비스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현재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22개사에 이르지만 헬스케어 자회사를 소유한 보험회사는 단 2개사에 그치는 등 보험회사들의 헬스케어 자회사 투자는 미진한 상황임⁴⁾
 - 본건 지원방안은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에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판매나 관련 시설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여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임
- 이에 본고에서는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의 내용 및 그간의 규제 변화를 개관하고 본건 지원방안의 의미를 살펴봄여 향후 지속적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해보고자 함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8. 23), “금융규제혁신 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② 금융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및 동 보도자료 [별첨 2]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위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p. 6
 2) 그 밖에 본건 지원방안에는 (i)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업무 범위 확대, (ii) 맞춤형 건강관리 혜택 제공 지원, (iii) 헬스케어 플랫폼 내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됨
 3)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본연의 보험업인 고유업무와 보험업법에 규정된 겸영업무(법 제11조)와 부수업무(법 제11조의2)로 제한됨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8. 23), “금융규제혁신 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② 금융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별첨 2], p. 6



2. 보험업법상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 변화

가. 자회사 소유 규제 개관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즉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함(법 제109조 본문)
 - 그 취지는 (i) 보험회사가 타인 자금⁵⁾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⁶⁾, (ii) 자회사의 부실위험이 보험회사로 확산되면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해칠 수 있고, (iii) 보험업과 무관한 제조업 등으로 무분별하게 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보험업 전문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임⁷⁾
-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업무를 하는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법 제109조 단서, 제115조)
 -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의 겸업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⁸⁾으로 일정 범위에서 자회사를 통한 업무 확장을 허용한 것임
 - 보험업법 제115조는 자회사 소유 요건을 크게 승인-신고-보고(2020년 법 개정 전에는 승인-신고)로 나누어 각 대상 업무를 열거함
 - 승인 대상 업무는 금융업,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부활 등 관리업무,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임
 - 신고 대상 업무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임
 - 보고 대상 업무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임
-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하고, ②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자산운용의 비율 한도⁹⁾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¹⁰⁾
 - 보험업감독규정은 자회사 승인을 받기 위한 보험회사의 요건 및 자회사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감독규정 제5-13조 본문, [별표11-2])하며, 이러한 요건은 자회사 소유 신고 및 보고 시에도 적용됨(감독규정 제5-13조 본문)

5) 보험계약자로부터 거수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자산을 말함

6) 이러한 규제 이유는 현재 보험회사의 자회사 투자 한도 기준이 자기자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설득력이 낮다는 견해가 존재함(성대규·안종민(2015), 『한국 보험업법』, 개정2판, p. 495)

7) 이성남(2022), 『보험업법』, pp. 559~560; 한기정(2019), 『보험업법』, p. 737; 정재웅(2017), 『보험업법 해설』, pp. 649~650; 성대규·안종민, 『한국 보험업법』, 개정2판, p. 495

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2003), 『보험업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 68

9) 일반계정의 경우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

10) 실행방안 발표 당시 영 제59조 제3항, 현행 법령 기준 영 제59조 제6항에 해당됨

나. 2019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전 자회사 업무 범위

- 헬스케어서비스, 핀테크 등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2014~2015년 무렵 보험업법의 자회사 업무 범위는 승인 대상 업무와 신고 대상 업무로 나뉘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었고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조차 없었음
 - 승인 대상 업무로는 법률에 열거된 금융업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i) 외국에서 하는 사업 및 (ii)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가 허용되었음
 - 신고 대상 업무는 보험회사의 사육관리업무,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와 자산유동화업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 등 자산운용 관련 업무 총 22개였음
- 이는 국내외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며¹¹⁾ 헬스케어서비스나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다. 2019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2018년 발표된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¹²⁾의 후속 조치로 보험회사의 핀테크기업 소유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짐(영 제16조 제1항 제1호 개정)
 -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 업무로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추가해¹³⁾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승인 대상 업무를 넓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위 시행령 규정 및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가 허용되고 있음

11) 당시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자회사 업종을 규제하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더라도 해석을 통해 다양한 업종을 포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음. 은행법은 ‘은행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 전산업’, ‘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임. 또한 열거된 업무 범위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뉴욕주 등 보험회사의 자회사 영위 업무를 제한하지 않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회사 소유를 규제하고 대상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었음. 즉, 일본 보험업법은 우리 법상 신고 대상 업무와 유사한 종속업무 자회사 및 금융 관련 업무 자회사만 하더라도 각 24개 호 및 45개 호로 다양하게 열거했는데 그중에는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등 운영, 건강, 복지 또는 의료에 관한 조인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양승현(2019),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KiRi리포트』)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11. 27),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1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2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p. 2

라. 2020년 보험업법 개정 및 2021년 동 시행령 개정 후 자회사 업무 범위

○ 2020년 12월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은 제115조의 자회사 소유 절차를 기존의 승인-신고의 2단계에서 승인-신고-보고의 3단계로 재편하고, 기존의 신고 대상 업무를 신고 대상 업무 및 보고 대상 업무로 나누어 규정함

- 승인 대상 업무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을, 신고 대상 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추가해 자회사 업무 범위를 확대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사후 보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적시 투자를 가능하게 하였고, 금융위원회 고시로 보고 대상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표 1〉 자회사 소유 절차별 업무 범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승인 대상	
• 금융업,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보험계약 관리업무 •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 - 외국에서 하는 사업(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등 제외) - 기업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사무처리 대행업무 -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 금융업,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보험계약 관리업무 •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 - 외국에서 하는 사업(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등 제외) - <u>본인신용정보관리업</u> - 기업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사무처리 대행업무 -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신고 대상	신고 또는 보고 대상
• 보험회사의 사옥관리, 보험수리, 손해사정, 보험대리 등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 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보험수리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업, 투자자문업, 부동산업 등	• 보험회사의 사옥관리, 보험수리, 손해사정, 보험대리 등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 <u>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u> • 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보험수리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업, 투자자문업, 부동산업 등
	보고 대상
• 사회기반시설사업, 자산유동화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 사회기반시설사업, 자산유동화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 <u>그 밖에 위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u>



3. 본건 지원방안 검토

- 본건 지원방안은 보험회사 본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좁아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투자에 소극적인 점을 문제로 인식함
 - 예컨대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 관련 제품의 판매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로는 허용되지 않음
- 금융감독당국은 법령해석 내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 자회사 소유기준을 마련하고 인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방침임
 - 원칙적으로 (i) 보험회사가 수행 가능한 헬스케어 업무는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로도 허용하고, (ii)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기로 함
 - 또한, 보험사와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관련 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¹⁴⁾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소비자가 건강관리기기 구매, 체육시설 등록이용, 건강상담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일체로 제공받을 수 있어 효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이미 지난 6월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헬스케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음¹⁵⁾
 - 보험회사는 보험업 경영이나 부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업무가 가능¹⁶⁾한 점을 고려할 때 헬스케어 자회사 또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본 것임
- 일련의 규제 개선 결과 현행 보험업법이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열거된 업무라도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법적 위험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임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금지기준¹⁷⁾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모두 허용되지만,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 범위는 여전히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열거된 업무만 할 수 있음
 - 즉,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규제를 위반한 것이 됨
 - 따라서 본건 지원방안은 헬스케어 자회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임

14) 기업·개인 대상 건강상담·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판매·중개·배송 및 관련 물품 임대·광고(대행), 헬스케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관련 시설 운영 등

15)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제220149)

16) 보험업법 제11조 제2호, 동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9호

17) 보험업법 제11조의2

- 본건 지원방안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말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향후 개선방안

- 보험회사가 부수업무 내지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지도로서 법제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 그러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범자의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헬스케어서비스 외의 자회사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신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음
- 그간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신사업 분야 진출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자회사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험회사가 본연의 보험업에 전념함으로써 보험업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것임
 - 그러나 과거와 달리 기술과 보험업의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제공, 보험회사의 자산과 위험관리 노하우를 이용한 지역사회 기여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보험업 발전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나, 이러한 논의는 보험업의 전문성 강화 외에 보험회사의 위험전이 방지나 이해상충 방지 등 규제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변화된 지형하에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 신고 대상 업무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바, 허용 업무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고 대상 업무에 대해 열거된 업무 외에 그와 유사한 것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었는바, 신고 대상 업무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위임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헬스케어서비스 외에 신고 대상 업무 전체에 대해서 해당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¹⁸⁾
 - 아울러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금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회사 업무를

18) 일본 보험업법은 우리 보험업법의 신고 대상 업무와 유사한 종속업무 및 금융 관련 업무를 시행령에 열거하면서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해당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영위하는 것에 한함)'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음(일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1항 제26호 및 제2항 제47호)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보험업제도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사업분야 진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